

◎ 法律 第4061号

# 에너지利用合理化法中改正法律

국회에서 의결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

198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강영훈  
국무위원 동력자원부 장관 이봉서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목표원단위)**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의 利用效率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使用者에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製品의 單位當 에너지使用目標量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에너지利用合理化實施計劃)**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第3條의 规定에 의한 基本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에너지利用合理化에 관한 實施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第6條 第4項중 “大衆媒體”를 “廣告媒體”로 한다.

第7條를 削除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에너지使用計劃의 申告)**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工場 기타 施設을 新設하거나 增設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工場 기타 施設의 에너지使用計劃을 動力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0條의 规定에 의한 热供給事業의 許可 또는 電氣事業法 第4條의 规定에 의한 電氣事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에너지使用計劃이 第11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에너지管理基準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에너지使用計劃의 修正 또는 補完을 勸告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规定에 의한 申告의 내용·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에너지管理 基準등)**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關係 專門家의 의견을 들어 에너지使用者가 에너지를 效率적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需要로 하는 基準(이하 “에너지管理 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에너지使用者의 에너지管理狀況에 대한 調查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調査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調査結果 에너지使用者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에너지管理基準에 따라 에너지management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에너지management基準의 이행을 위한 指導(이하 “에너지management指導”라 한다)를 할 수 있다.

第1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에너지管理者의 採用)** ①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는 에너지를 效率적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에너지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② 指定에너지management對象者는 에너지management者를 採用 또는 解任하거나 에너지management者가 退職한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는 에너지管理者를  
解任하거나 에너지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動  
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에너지  
管理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第14條의 題目 “(에너지管理診斷命令)”을 “  
(에너지管理診斷勸告)”로 하고,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2項을 削除한다.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management指導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너지使用者에게 動力資源  
部長官이 지정하는 에너지management診斷 專門機關  
(이하 “診斷機關”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  
management診斷을 받을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是正勸告)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1條第  
2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management指導 또는 第14  
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management診斷結果  
에너지損失要因의 減少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에너지使用者에게 에너지  
損失要因의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第17條를 削除한다.

第18條 第1項중 “車輛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輸送手段”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車輛”으로  
하고, 同條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5項을 削除한다.

③ 動力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車輛의  
走行距離를 測定한 결과 單位燃料量에  
대한 目標走行距離에 미달될 때에는 그 사실  
을 公表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單位燃料量에 대한 走  
行距離의 測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第19條의 題目중 “許可等”을 “許可”로 하고,  
同條 第3項을 削除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製造業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製造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의 許可가  
取消된 후 6月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法人

第23條 本文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 第2號但書를 削除한다.

다만, 製造業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發生한 날로부터 3月 이내에 그 製造業  
을 讓渡하거나 代表者(法人的 경우에 한한다)  
를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4條 第4項을 削除한다.

第27條 第4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第5項  
을 削除한다.

④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갖춘 경우에는 그 特定熱  
使用機資材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  
工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28條의 2내지 第28條의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8條의 2(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確  
認) ① 第31條의 2의 規定에 의한 檢查對象機  
器가 아닌 特定熱使用機資材中 動力資源部令  
이 정하는 特定熱使用機資材를 設置·施工한  
者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道知事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의 節次 기타 필  
요한 사항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28條의 3(設置·施工確認의 代行) ① 道知事  
는 動力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設置·施工確  
認에 관한 專門機關(이하 “確認機關”이라 한  
다)으로 하여금 第28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施工確認을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動力  
資源部長官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한  
施設과 技術要員을 확보하여야 한다.

第28條의 4(確認機關의 業務規程) ① 第28條  
의 3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確認機關은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規程을 정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確認機關이 第28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 · 施工確認을 할 때에는 第28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의 節次등과 第1項의 業務規程에 따라야 한다.

第28條의 5(確認機關의 指定取消等) 動力資源部長官은 確認機關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確認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위반하여 設置 · 施工된 特定熱使用機資材를 당해 基準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

2. 第28條의 3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28條의 4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7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5. 第7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第29條(施工業의 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工業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業의 지정이 取消된 후 6月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 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代表者が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法人

第30條의 題目 “(施工業의 指定取消等)”을 “(施工業指定의 取消等)”으로 하고, 同條 第1項本文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同條同項 第3號를 第4號로 하고, 同條同項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New設하며, 同條同項 第4號(종전의 第3號) 但書를 削除한다.

만일, 施工業者가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月 이내에 그 施工業을 讓渡하거나 代表者(法人의 경우에 한한다)를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第28條의 2의 規定에 위반한 때

第31條의 2의 題目 “(製造 · 設置檢查 등)”을 “(檢查對象機器의 檢查)”로 하고, 同條第5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New設하며, 同條 第6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道知事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의 내용중 檢查對象機器의 安全管理 및 危害防止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檢查에 合格되지 아니한 檢查對象機器에 대하여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그 檢查에 合格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道知事은 第1項 ·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에 있어서 檢查對象機器의 安全管理 및 危害防止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檢查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第33條의 題目 “(業務規定)”을 “(檢查機關의 業務規程)”으로 한다.

第36條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③ 檢查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查對象機器操縱者를 採用 또는 解任하거나 檢查對象機器操縱者가 退職한 때에는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 檢查對象機器設置者는 檢查對象機器操縱者를 解任하거나 檢查對象機器操縱者가 退職하는 때에는 解任 또는 退職 이전에 다른 檢查對象機器操縱者를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다른 檢查對象機器操縱者를 採用期限을 延期할 수 있다.

⑤ 道知事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代象機器操縱者 採用期限의 延期를 승인하는 경우에 당해 檢查對象機器設置者에게 檢查對象機器操縱者의 採用前日까지 檢查對象機器의 安全管理 및 危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은 命할 수 있다.

第40條 第1項중 “물 또는 蒸氣를 配管으로”를 “물 · 蒸氣 기타 热媒體를 热輸送管으로”로 하

고, 同條 第3項중 “第20條 第1號”를 “第20條 第3號”로 한다.

第41條 第4項중 “지체없이”를 “動力資源部令이 정하는期間내에”로 한다.

第44條의 2 第1項 · 第44條의 3 第1項 및 第44條의 4 第1項을 “導管”을 각각 “熱輸送管”으로 한다.

第45條 第1項중 “動力資源部長官은 热供給事業者가”를 “热供給事業者는”으로 하고, “받게 할 수 있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同條 第5項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 第7項을 第8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7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⑦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에 합格되지 아니한 热供給施設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47條 本文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 第1號但書를 削除한다.

다만, 热供給事業者가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月 이내에 그 热供給事業을 讓渡하거나 代表者(法人의 경우에 한한다)를 變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9條 第1項 第4號를 削除한다.

第51條 第1項 第1號 및 第6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 同項 第7號를 第9號로 하며, 同條同項에 第7號 및 第8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 同項 第9號(종전의 第7號) 중 “第6號”를 “第8號”로 한다.

1. 代替에너지의 利用事業

6.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에너지管理診斷 및 技術의 指導 · 開發 또는 導入

7. 에너지利用合理화를 위한 施設의 취득 및 貸與

8. 第1號 내지 第7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第58條 第1項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理事 6人이내(3人 이내의 非常任理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第63條 第1項중 “任員”을 “任員(非常任理事인 任員은 제외한다)”로 한다.

第73條 第1項중 “診斷機關” 다음에 “確認機關”을 插入한다.

第74條 第1號의 2를 削除하고, 同條 第7號를 第9號로 하며, 同條 第4號 내지 第6號를 각각 第5號 내지 第7號로 하고, 同條에 第4號 및 第8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28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 · 施工確認을 받고자 하는 者

8. 第40條의 2의 規定에 의한 热供給事業의 讓渡許可 또는 合併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第75條의 2 第2號를 削除하고, 同條 第5號 내지 第7號를 각각 第6號 내지 第8號로 하며, 同條에 第5號를 다음과 같이 New設한다.

5. 第28條의 5의 規定에 의한 確認機關의 指定取消 또는 業務停止

第76條 第1項本文중 “診斷機關” 다음에 “確認機關”을 插入하고, 同條同項但書중 “檢查機關”을 “確認機關 또는 檢查機關”으로 한다.

第77條를 削除한다.

第79條 第1號 · 第1號의 2 및 第3號를 각각 削除한다.

第80條 第6號중 “第3項 또는 第5項”을 “第3項 · 第5項 또는 第7項”으로 한다.

第81條 第1號를 削除하고, 同條 第4號 내지 第8號를 각각 第5號 내지 第9號로 하며, 同條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New設하고, 同條 第6號(종전의 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28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36條 第1項 ·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또는 同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者

第8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2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3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7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第84條 第1項 第2號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同項 第3號를 削除한다.

2. 第8條 第1項 · 第10條 第1項 · 第13條 第2項 · 第22조(第30條 第2項 및 第35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3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者

4. 第41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者

第85條중 “診斷機關” 다음에 “確認機關”을 挿入한다.

###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에너지使用計劃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종전의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에너지使用計劃書를 제출한 者는 第8條 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에너지使用計劃을 申告한 者로 본다.

③ (에너지管理者의 採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이전에 종전의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에너지管理者는 第13條 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採用되어 申告된 에너지管理者로 본다.

④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의 行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에너지利用合理化法 改正理由

○建築物內의 冷暖房溫度에 관한 制限基準의 設定制度를 廢止하는 等 에너지使用에 관하

여 實效性이 없거나 國民에게 不便을 주는 制限措置를 削除하고, 에너지利用合理化施策이 民間部門에서 自律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改善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1. 從前에는 에너지를 使用하여 製品을 만들 때 動力資源部長官이 그 製品의 單位當에너지의 使用目標量을 정하여 이를 公告하도록 하였던 것을 그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에너지使用者로 하여금 스스로 製品의 單位當에너지使用目標量을 設定하여, 履行할 것을 勸告할 수 있도록 함.

2. 從前에는 動力資源部長官은 指定에너지管理對象者等 에너지使用者에게 에너지管理指導를 함에 있어 必要한 境遇에는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에너지管理診斷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動力資源部長官이 에너지使用者에게 에너지管理診斷을 받을 것을 勸告할 수 있도록 함.

3. 動力資源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建築物內의 冷暖房溫度에 관한 制限基準을 정하여 이를 公告할 수 있고, 同 制限基準을 履行하지 아니한 一定基準以上의 建築物의 所有主에게 에너지의 供給을 制限할 수 있도록 하였던 條項을 削除함.

〈법제처 제공〉

## 유아카드 학습자료 시리즈



- 1 척척한글카드 (1권)
- 2 척척한글카드 (2권)

3 척척한글카드 (3권)

4 숫자놀이카드

5 영어놀이카드

6 빙고게임카드 (근간)

7 매트릭스퍼즐 (근간)

8 동화놀이카드 (근간)

9 유아미니퍼즐 (근간)

10 도형놀이카드 (근간)

\* 계속 발행됩니다

\* 각권 1,200 원



영재용 학습자료는  
영재문화사

서울·관악구 신림본동 1639-8

TEL : 887-3534